

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“ESG 경영”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함(안 제2조)
-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(안 제6조)
-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~제9조)
-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, 연구·조사 등을 위하여 도, 시군, 교육청, 시민단체,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가. 제출배경

- ESG*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(E), 사회(S) 및 지배구조(G) 부문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,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
* E(환경 environment), S(사회 social), G(지배구조 governance)
-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
 -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
 -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,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
- 이러한 ESG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지만, 정책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체제 변화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
- 따라서, ESG 경영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
- 기업은 실질적인 ESG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,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이나,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경영부담(시간, 비용 등)으로 인식하거나,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임
- ESG 등급 평가를 받은 충북 소재(본사 기준) 기업은 총 16개사이며 전체 대비 19.5% 수준이며 다음과 같음

<충북 ESG 등급평가 16개 기업 ESG 현황(2020년 KCGS 기준)>

기업	상장 시장	ESG 통합등급	환경(E) 등급	사회(S) 등급	지배구조(G) 등급	업종 (세세분류)	'19년 ESG통합등급 (변동)
A사	KOSPI	A+	A	A+	A+	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	(A+ —)
B사	KOSDAQ	A	B+	B+	A	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	B+ (1등급 up↑)
C사	KOSPI	B+	B+	B	B+	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	(B+ —)
D사	KOSPI	B	B	B	B	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	(B —)
E사	KOSPI	B	B	B+	B	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	(B —)
F사	KOSPI	B	B	B	B	고무,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	(B —)
G사	KOSDAQ	B	C	B+	B+	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	(B —)
H사	KOSPI	B	B	C	B	완제 의약품 제조업	(B —)
I사	KOSPI	C	D	C	B	피아노 제조업	(C —)
J사	KOSPI	C	D	C	B	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	B (1등급 down↓)
K사	KOSPI	C	C	B	B	다이오드,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	(C —)
L사	KOSPI	C	C	C	B	완제 의약품 제조업	(C —)
M사	KOSPI	C	C	B	B	전자축전기 제조업	(C —)
N사	KOSDAQ	C	D	C	B	완제 의약품 제조업	(C —)
O사	KOSDAQ	C	D	D	B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	(C —)
P사	KOSDAQ	C	D	C	B	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	신규

※ 자료 : 한국지배구조원(KCGS), ESG 등급조회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「산업발전법」 제18조(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) 및 제19조(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), 「지속가능발전법」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

○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	2021.07.23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	의안발의(심사 전)
충청남도	충청남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	의안발의(심사 전)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“ESG 경영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 - “ESG 경영”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
- 안 제3조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5조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, ESG 경영 확산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,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- 안 제6조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
-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10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, 연구·조사 등을 위하여 도, 정부, 시군, 교육청,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며,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**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**
-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, 기업 인식변화에 따른 인재 유입,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·확대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됨
- 그러나, 다수의 기업들이 ESG 등급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(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및 역량)가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**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**
- 따라서, 도 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